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정하여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부 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의 인력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상향 인력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및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의 정규 조직화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④ 국제협력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27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58호부터 제61호까지, 제63호부터 제66호까지 및 제68호부터 제9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보통신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2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통신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55호부터 제8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81호부터 제10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1항 중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통신정책관 및 방송진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네트워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통신정책관·방송진흥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신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36호부터 제6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방송진흥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70호부터 제9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3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8 제2호 및 별표 9 제2호와 같다”를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 시 소수

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별표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293”을 “29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206”을 “205”로 한다.

별표 5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90”을 “191”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을 “4”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6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91”을 “192”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5”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7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72”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872”를 “874”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5”를 “27”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를 삭제한다.

별표 8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73”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873”을 “875”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6”을 “28”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를 삭제한다.

별표 9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81”을 “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9”를 “80”으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0”를 삭제한다.

별표 1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2)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과	1명 (4급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3) 네트워크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4)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	1명 (4급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별표 12를 삭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18명”을 각각 “19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u>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신 설></u>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u>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② <u>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③ <u>정책기획관은 직제 제9조제3</u>
<u><신 설></u>	

<u><신 설></u>	<u>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④ <u>국제협력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⑤ <u>비상안전기획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⑥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u><신 설></u>	
② ~ ⑩ (생략)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u>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신 설></u>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 ----- -- <u>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② <u>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u>

	기관은 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③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④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27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58호부터 제61호까지, 제63호부터 제66호까지 및 제68호부터 제9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② ~ ⑮ (생 략)	⑥ ~ ⑮ (현행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 ----- ----- --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

급으로 하고, 정보통신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
<신 설>	②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통신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③ 정보통신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④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55호부터 제8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

무원으로 임용한다.	-----.	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용한다.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정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두	정원) ① -----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
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	-----	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	원의 운영) ① -----
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	-----.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	-----	제3조의3제1항 따라 과학기술	-----
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	-----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	-----	는 <u>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u>	-- <u>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u>
원의 <u>5퍼센트</u> 를 넘지 아니하는	--- <u>7퍼센트</u> -----	<u>“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u>	<u>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u>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	<u>한다) 정원은 별표 5 제2호, 별</u>	<u>으로 활용할 수 있다.</u>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	-----	<u>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u>	
며, 별표 6의 정원 중 9급 1명은	-----	<u>8 제2호 및 별표 9 제2호와 같</u>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u>다.</u>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	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	----. -----	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	-----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
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원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		운영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	-----		
른 총정원의 <u>3퍼센트</u> 를 넘지 아	----- <u>7퍼센트</u>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8호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8호 과
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	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	-----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9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 · 293	· · 294	+1
·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 206	· 205	-1
·	·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 외한 18명(행정사무관·공업사 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 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 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 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 며, 2022년 6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공 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 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 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 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 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 주사 또는 연구사 18명으로 분 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 19명 ----- ----- ----- ----- ----- ----- ----- ----- ----- ----- ----- ----- ----- ----- ----- 19명 ----- --.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90</u>	<u><삭 제></u>	-190
일반직 계	<u>190</u>	<u>191</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3</u>	<u>4</u>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1.0</u>	<u><삭 제></u>	-1.0
일반직 계	<u>1.0</u>	<u><삭 제></u>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0</u>	<u><삭 제></u>	-1.0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원은 제외한다)	<u>191</u>	<u><삭 제></u>	-191
일반직 계	<u>191</u>	<u>192</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4</u>	<u>5</u>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1.0</u>	<u><삭 제></u>	-1.0
일반직 계	<u>1.0</u>	<u><삭 제></u>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 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 서기보	<u>1.0</u>	<u><삭 제></u>	-1.0

[별표 7]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원은 제외한다)	<u>872</u>	<u><삭 제></u>	-872
일반직 계	<u>872</u>	<u>874</u>	+2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25</u>	<u>27</u>	+2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2.0</u>	<u><삭 제></u>	-2.0
일반직 계	<u>2.0</u>	<u><삭 제></u>	-2.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 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 서기보	<u>2.0</u>	<u><삭 제></u>	-2.0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873</u>	<u><삭 제></u>	-873
일반직 계	<u>873</u>	<u>875</u>	+2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26</u>	<u>28</u>	+2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2.0</u>	<u><삭 제></u>	-2.0
일반직 계	<u>2.0</u>	<u><삭 제></u>	-2.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2.0</u>	<u><삭 제></u>	-2.0

[별표 9]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81</u>	<u><삭 제></u>	-81
일반직 계	<u>81</u>	<u>82</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9</u>	<u>80</u>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1.0</u>	<u><삭 제></u>	-1.0
일반직 계	<u>1.0</u>	<u><삭 제></u>	-1.0
3급 또는 4급 이하	<u>1.0</u>	<u><삭 제></u>	-1.0